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 ○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·기능·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 및 제3조)
 ○ 위원의 임기·직무·회의·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～제8조)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기 타
 1) 입법예고 : 2015. 11. 12～ 12. 2(의견없음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・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, 특정 성(性)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총무과장
2. 위촉직 위원 :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,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1.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)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